

동작구의회공고 제2023-45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2023년 6월 5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할 때 동작경찰서와 협의사항을 추가하여 범죄예방 효과를 극대화하며,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범죄예방 CCTV 설치 시 동작경찰서와 협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나.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삭제함(안 제21조 ~ 안 제28조)

다. 알기쉬운 법령장비 기준에 따른 조례 정비(안 제3조, 안 제3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 [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서울특별시 동작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이”를 “조례는”으로 한다.

제2조제10호를 삭제한다.

제3조 중 “구청”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구청장은 범죄예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때에는 서울동작경찰서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다만, 긴급히 설치해야 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의 제목 “(의견수렴 및 고지)”를 “(의견수렴)”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영상정보처리기기의”를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로 한다.

제7조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을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로, “영상 정보를 수집하거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회전·확대기능 등) 하여서”를 “영상정보의 수집하거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확대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어린이”를 “구청장은 어린이”로 한다.

제12조의 제목“(관제센터 운영업무 등의 위탁)”을“(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등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관제센터”를 각각 “통합관제센터”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통합관제센터의 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권한의 수임)”을“(통합관제센터의 통합·연계)”로 한다.

제14조제목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다른 기관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통합관제센터에 통합·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장(제21조부터 제28조까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u>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u>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와 통합관제센터를 구축·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조례는</u> ----- -----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9. (생략)</p> <p>10. <u>“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영상정보보호 등 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안에 대한 심의기구를 말한다.</u></p>	<p>제2조(정의) ----- -----.</p> <p>1. ~ 9.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제3조(적용범위) <u>구청이</u> 공익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와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이용·제공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3조(적용범위) <u>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u>----- ----- ----- ----- -----.</p>

치 현황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할 때에는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거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회전·확대기능 등)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어린이, 여성, 노약자 등의 긴급구호나 범죄예방 등 위급상황 발생시 긴급조치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관제센터 운영업무 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관제센터의 관제 및 유지보수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제센터의 관제 및 유지보수 업무 등을 위탁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6조에

-----.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 영상정보의 수집하거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확대기능 등을 설정하여서--.

②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

③ 구청장은 어린이-----

-----.

제12조(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등의 위탁) ① ---- 통합관제센터-----

-----.

② ----- 통합관제센터-----

-----.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제13조(관제의 범위) 통합관제센터의 장은 통합관제센터에 전송되는 영상정보에 한하여 실시간으로 관제할 수 있다. 다만, 기능부서의 장 및 타 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실시간 관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영상정보 처리기기는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권한의 수입) 다른 기관으로부터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에 통합·연계하여 관제를 의뢰 받은 경우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수입 받아 총괄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업무권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장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21조(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

제13조(관제의 범위) 구청장-----

-----.

제14조(통합관제센터의 통합·연계) 구청장은 다른 기관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통합관제센터에 통합·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삭 제>

<삭 제>

<삭 제>

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구의원 2명
2. 통합관제센터 소관업무 부서장
3. 관할 경찰서 CCTV업무 부서장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권위원회 위원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분야(정보통신, 방법, 보안 등) 전문가
6. 지역 내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민간전문가 또는 주민대표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3조(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 당연직 위원 및 구의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

<삭 제>

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본인의 자진사퇴

제2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무)

<삭 제>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 등을 주재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운영위원회 심의안건) 서울특별시 동작구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삭 제>

항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 및 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2. 통합관제센터 운영상의 문제점

에 대한 개선사항

3. 영상정보처리기기 연계계획의

타당성 여부

4. 영상정보의 보유목적 이외의 이

용·제공시 심의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제26조(운영위원회 운영) ① 운영위

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의 요청이 있을 때 회의(심의)를 개

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전담부서의 업

무관련팀장 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

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

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

<삭 제>

<삭 제>

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2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삭 제>